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61

발의연월일: 2020. 8. 19.

발 의 자:도종환·전혜숙·전재수

강민정 • 이상헌 • 안민석

김병기 · 신동근 · 김영주

유정주 · 김병욱 · 조승래

김승원 • 우상호 • 노웅래

민홍철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함)에서 생산되는 공문서가 우리말을 쓰는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낯선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국민과의 소통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공문서의 작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만 공문서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아 주로 공문서가 문자로 표기되는 문서 형식으로 인식되고 있어 공무상 사용하는 전반적인 언어와 이의 표현물까지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또한, 국가기관 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 어책임관을 보좌하는 실질적인 국어감수 인력 등이 없어 국어책임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이에 현행법에 기존의 공문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등이 공무상 생산한 각종 표시물, 기록물 등을 포함하여 '공문서등'의 범위를 명시하고, 공문서등에 대한 평가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공공기관등의장은 국어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문서등이 국민과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제7조제2항, 제10조 및 제14조).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문서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현수막・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공공기관등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7조제2항 중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중"을 "공공기관등 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등"으로, "소속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임무 등"을 "임무와 제2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자격요건 등"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4조의 제목 "공문서의 작성"을 "공문서등의 작성·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공문서를"을 "공문서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공문서"를 "공문서등"으로, "사용"을 "사용, 평가 및 공개"로 한다.

② 정부는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누리집을 말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문서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하는 공문서등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공문서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
	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
	공기관등"이라 한다)이 공무
	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
	(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
	·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현수막·안내판 등의 특수
	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공공기관등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	②
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u>국가기관, 지방자</u>	<u>공공기관등 중</u>
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 라 한다) 중 관련 기관의 장에 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국 지 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u>임무 등</u>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 전 관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 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 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u>공</u>
<u>공기관등</u>
소속 공무원 <u>,</u>
<u> 직원</u>
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어에 관한 지식과 경
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u>③</u>
임무와 제2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자격요건 등
<u>.</u>
제14조(<u>공문서등의 작성ㆍ평가</u>)
① <u>공문서등을</u>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 국 글자를 쓸 수 있다.

<u><신 설></u>

②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u>공</u> <u>문서</u>의 한글 <u>사용</u>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공공기관등이 작성
한 공문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누리
집을 말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u>한다.</u>
<u>3</u> <u>3</u>
<u>문서등사용, 평가 및</u>
공개